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대리점 (주)케이에셋 (남궁찬)	14011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조만	680226-*****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김경숙	590828-*****	경기도 의왕시 오린계 2길
백지연	6912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가길
주옥희	621002-*****	경남 김해시 율하3로91번길
보험대리점 (주)인스코리아 (김준구)	180111-*****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7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대리점 (주)케이에셋 (대표이사 남궁찬)	2012.4.30.~2013.8.23. 기간 중 2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무자격자 지○○ 등 2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 2천만원
조만	2012.1.4.~2013.10.8. 기간 중 16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1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 등 11명에게 8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김경숙	2012.2.1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이○○ 등 24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백지연	2012.4.2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강○○ 등 12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주옥희	2012.1.4.~2012.7.31. 기간 중 삼성생명보험(주)의 소속 보험설계사(LIG손해보험(주) 교차모집)로 근무하면서 86건(생보28건, 손보 58건)의 보험계약을 (주)아이에프씨그룹 소속 보험설계사 최○○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31백만원(생보 24백만원, 손보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과태료 1천만원
보험대리점 (주)인스코리아 (대표이사 김준구)	(주)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김준구는 2011.3.31.~2011.10.10.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26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 및 방○○에게 총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 1,220만원

####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